###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53 발의연월일: 2023. 6. 1.

발 의 자: 강득구·최혜영·김병욱

정일영 • 민병덕 • 김민철

양기대 · 김철민 · 정춘숙

민형배 • 도종환 • 최강욱

홍기원 · 서영석 · 김의겸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생활지도에 관 한 규정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음.

그러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의 부작용 또는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 도 행위 등에 대한 조사·수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현장의 특 성 등에 관한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학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

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사·수사기관 또는 법원 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 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사항은"을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 2의2.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
- ③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조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수사기관 또는 법 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	②
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의2. 「초・중등교육법」 제20
	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를 위한 조치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
	법」 제20조의2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
	원에 대하여 조사・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
	당 조사・수사기관 또는 법원
	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u>3</u> 7	세2항에	따른 시청	책의	구체
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	나시
행에	필요한	<u>사항은</u>	대통	렁렁
ㅇ 구	정하다			

제출하여야 한다.	
<u>4</u>	
	- <u>사항과 제</u>
3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에 필
요한 사항은	